



신고 의무 행위 관련 정책 (빅토리아)

1. 개요

- 1.1 우리는 사랑과 공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어린이들을 최우선적으로 안전하게 지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직원, 담당자, 목회자, 종교 지도자, 계약자 그리고 자원 봉사자들을 포함하여 호주 연합교단 (빅토리아) (“연합교단”)에 의해 고용되었거나 관련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들의 복지와 안전을 홍보해야 하는 책임을 나누어 가지며, 모든 형태의 학대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 1.2 우리는 또한 여러 외부 지침서와 규정에 의거하여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지킵니다. 이 범위에는 어린이와 청소년 위원회 (“위원회”)에 의해 집행된 신고 의무 행위에 관한 제도를 확립한 *어린이 복지 및 안전법 2005* (Vic)을 포함합니다.
- 1.3 신고 의무 행위에 관한 제도는 신고 의무 행위에 대한 혐의 또는 연합교단의 고용인들 (직원, 담당자, 목회자, 종교 지도자, 계약자 그리고 자원 봉사자를 포함하여)에 의해 가해지는 신고 의무 행위와 관련된 부당행위를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 1.4 그 행위나 부당행위가 고용인의 연합교단과의 고용 기간 또는 계약 기간 중에 발생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고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1.5 *어린이 복지 및 안전법 2005*에서는 기관장이 신고 의무 행위에 대한 제도 방침에 의거하여 신고 의무 혐의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러한 혐의에 관한 조사와 결과들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2. 목적

- 2.1 이 정책의 목적은 연합교단이 신고 의무 행위 제도 하의 법적 규제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 2.2 단체의 책임자인, 사무총장은 연합교단이 신고 의무 행위 제도 하의 법적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사무총장은 교회가 다음 사항을 시행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a) 연합교단의 고용인이 그의 고용 기간 중에 저지를 수 있는 신고 의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 (b) 연합교단의 고용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라도 그가 알게 된 신고 의무 혐의에 관하여 사무총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
 - (c) 연합교단의 고용인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라도 그가 알게 된 신고 의무 혐의를 사무총장을 포함하여 위원회로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
 - (d) 신고 의무 혐의를 받고 있는 연합교단의 고용인에 맞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 2.3 연합교단과 관련된 모든 사람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그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사무총장이나 위원회로 고용인이 관련된 신고 의무 행위에 따른 혐의에 대해 사실 공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정의 및 중요한 의미를 지닌 어휘들

- 3.1 이 정책에 적용된 다음의 정의들은 *어린이 복지 및 안전법 2005* (빅토리아)의 조항과 위원회에서 제공한 지도 지침과 일치합니다¹:

어린이(child)	18 세 미만의 사람.
고용인 (employee)	18 세 이상의: (a) 어린이와 연관된 연합교단의 업무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고용되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연합교단에 고용된 사람; (b) 자원봉사자, 계약자, 간사 또는 담당자를 포함하여 어린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합교단에 고용된 사람; (c) 목회자, 종교 지도자 또는 고용인 ((a)와 (b) 단락의 의미 내)을 일컫는다.
단체장 (head of entity)	조직의 책임자는 조직 내의 의사 결정에 주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최고경영자, 관리부장 또는 비슷한 직분이거나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빅/타스 주총회의 단체장은 사무총장으로 규정 된다.

¹ <https://ccyp.vic.gov.au/child-safety/>

합리적 심증 (reasonable belief)	<p>상식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 의무 행위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게 하는 사실에 근거한 모든 심증을 말한다. 합리적 심증은 의심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 심증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나, 확신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a)그들 스스로가 행위를 목격한 경우; (b) 행위를 당한 어린이로부터 들은 경우; 또는 (c) 다른 출처 (신고 의무 행위나 부당 행위를 목격한 다른 사람을 포함한)를 통해 전달된 정보를 받았을 경우 합리적 심증을 가질 수 있다.</p>
신고 의무 혐의 (reportable allegation)	<p>한 사람으로 하여금 고용인이:</p> <p>(a) 신고 의무 행위: 또는</p> <p>(b) 신고 의무 행위와 관련된 부당 행위를</p> <p>저질렀다는 합리적 심증을 갖게 하는 모든 정보를 말하며,</p> <p>그 행위나 부당 행위가 고용인의 고용 기간 중에 발생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다.</p>
신고 의무 행위 (reportable conduct)	<p>신고 의무 행위는 다음을 의미한다:</p> <p>(a) 그 범죄와 관련되어 형사상 소송 절차의 진행 또는 종결 여부와 상관 없이 어린이를 상대로 또는 어린이가 동석한 상황에서 어린이의 의지에 반하여 저지르는 성범죄;</p> <p>(b) 어린이를 상대로 또는 어린이가 동석한 상황에서 어린이의 의지에 반하여 저지르는 성적 부당 행위;</p> <p>(c) 어린이의 의지에 반하여 어린이를 상대로 또는 어린이가 동석한 상황에서 저지르는 신체적 폭력 행위;</p> <p>(d) 어린이에게 현저한 정서적 또는 심리적 해를 입히는 일체의 행동;</p> <p>(e) 어린이에 대한 두드러진 방임 행위.</p>
성적 부당 행위 (sexual misconduct)	<p>성적 부당 행위에는 신체적 접촉 및 말투 또는 성적 (性的)인 성질의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 부적절하게 손을 대는 것, 그루밍 (grooming) 행위 그리고 관음증 (觀淫症)을 포함한다.</p>

4. 신고 의무 행위에 대한 사전 방지책

4.1 연합교단은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 학대의 위험에 대한 조기 발견과 대응에 대해 사전 방지 처리법을 수용한 정책과 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과 관행에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어린이 안전 정책
- 어린이 안전 행동 강령

5. 신고 의무 혐의 통지 절차

5.1 누구라도 연합교단의 고용인이 (a) 신고 의무 행위; 또는 (b) 신고 의무 행위와 관련된 부당행위를 저질렀다는 합리적 심증을 갖게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정보를 사무총장 (General Secretary)에게 보고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이 링크를 클릭한다: <https://ucavictas.org.au/keepingchildrensafe/reportable-conduct/>
- 전화 또는 팩스로 혐의나 신고 의무 행위에 대해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사무총장에게 알린다:
 - 전화: (03) 1300 789 374
 - 팩스: (03) 9650 7019
- **Private and Confidential – Reportable Conduct (개인 비밀정보 – 신고 의무 행위)** 로 표시하여 reportableconduct@victas.uca.org.au 로 이메일 한다.
- 밀봉한 봉투에 **Private and Confidential – Reportable Conduct (개인 비밀정보 – 신고 의무 행위)** 로 표시하여 사무총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Uniting Church in Australia
130 Little Collins Street
Melbourne Vic 3000

5.2 만약 연합교단의 사무총장과 관련된 신고 의무 혐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직접 총회장 (Moderator)에게 통지합니다:

- 밀봉한 봉투에 **Private and Confidential – Reportable Conduct (개인 비밀정보 – 신고 의무가 있는 행위)**로 표시하여 총회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Uniting Church in Australia
130 Little Collins Street
Melbourne Vic 3000

- 전화 또는 팩스로 혐의나 신고 의무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총회장에게 알린다:

Telephone: (03) 1300 789 374

Facsimile: (03) 9650 7019

- 5.3 신고는 어린이 및 청소년 위원회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로 직접 할 수 있습니다:

Commission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어린이 및 청소년 위원회)

Level 18

570 Bourke Street

Melbourne Victoria 3000

Telephone: (03) 8601 5281

email: childsafestandards@ccyp.vic.gov.au

Document Review History

Version Number	Date	Reason	Resolution Number	Approved
RCS1	18.12.17	Legislative requirement	SSC15.23.5	General Secretary (Policy Manager – Associate General Secretary)